

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학회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시행: 1996. 2. 23.

개정: 2005. 3. 23.

개정: 2022. 3. 31.

定 款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학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자거래를 위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관련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학술적 연구와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전자거래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토론회의 개최
- 2) 전자거래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 사업
- 3) 전자거래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대한 연구
- 4)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연구
-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6) 위 각 호의 업무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 회원, 단체 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 2)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써 전자거래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써 정보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전자거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써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

2. 학생회원

대학에서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3. 단체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5.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써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 절차는 본 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2)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소정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 1)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 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포함하여 50인 이하의 이사
 - 2. 감사 2 인
- 2)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피선하고 피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과 감사 및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총회는 이사(부회장 포함)의 지명을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 하도록 한다.

제12조(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의무를 대행하며, 총회의 결을 거쳐 다음 임기의 회장직을 승계한다.
- 3) 단, 산업계 등의 명망 있는 인사가 회장으로 추대될 경우 수석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연임한 후, 총회의결을 거쳐 다음 임기의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회의 재무상황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일
-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 5)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상임이사의 지명)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상임 이사회 의 직무는 본 회 규정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 2)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대회 중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2) 총회소집은 회장이 의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4일전까지 회원에게 당 학회지, 논문지,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2) 총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3) 회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 1)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있는 후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2)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있는 후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구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이사회는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서면의결의 금지) 이사회는 의결은 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

제24조 (회의록)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이사 전원과 감사의 기명 날인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25조 (재무) 본 회의 회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매 회계년도 1개월 이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제시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해산)

-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본 법인이 해산한 때에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29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광고 및 그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이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2022년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학회 회장